

보도	2026.3.25.(수) 조간	배포	2026.3.24.(화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	책임자	실장	오정근	(02-3145-8730)
	보험사기대응단	담당자	팀장	김철영	(02-3145-8888)
	경찰청 국가수사본부	책임자	총경	박찬우	(02-3150-2037)
	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	담당자	경정	진우경	(02-3150-2168)
	생명보험협회	책임자	본부장	최종윤	(02-2262-6614)
	보험계약관리부	담당자	부장	김희경	(02-2262-6658)
	손해보험협회	책임자	본부장	신종혁	(02-3702-8580)
	보험사기조사부	담당자	팀장	김홍주	(02-3702-8598)

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 확대 운영

- 신고대상을 기존 실손보험 이외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하고
신고기간도 기존 3월말에서 10월말까지 대폭 연장 -

< 주요 내용 >

- ◆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을 확대 (신고 기간 및 대상) 운영하고 경찰청의 '보험사기 특별단속'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기할 계획

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 확대 운영(안) 요약

- ① 신고기간**
(기존) '26.1.12.(月) ~ 3.31.(火) → (변경) '26.1.12.(月) ~ 10.31.(土)
- ② 신고대상**
(기존)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·의원(한의원, 한방병원 포함), 의사, 브로커(설계사) 등
(변경) 전국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·의원(한의원, 한방병원 포함), 의사, 자동차 정비업체<덴트포함>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,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, 브로커(설계사) 등
- ③ 포상금액 및 지급대상**
(기존) 5천만원(신고인이 병·의원 관계자인 경우), 3천만원(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), 1천만원(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)
(변경) 5천만원(신고인이 병·의원 관계자인 경우), 3천만원(신고인이 병·의원 제보 브로커, 자동차 정비업체<덴트포함> 및 렌터카업체 관계자인 경우), 1천만원(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 및 차주·운전자·동승자 등 기타 일반인인 경우)

I. 추진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생·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을 '26.1.12.부터 운영하여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.

<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중 제보 사례>

제보자	제보 주요 내용*
병·의원 관계자	· △△△ 의원은 환자에게 실제로 비만치료제를 제공하였음에도, 다른 질환으로 치료(도수·무좀치료)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
환자	· 브로커(GA 소속 보험설계사)가 ○○○ 의원과 결탁하여 환자를 알선하고 있고, 환자는 보험 가입 전에 미리 혐의 의원으로부터 진단·치료를 한 후 보험가입을 하고 면책기간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혐의 의원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음

*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자 실제 제보 내용을 일부 각색

-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「특별 신고·포상 기간」을 경찰의 「보험사기 특별단속」 종료기간('26.2.2.~10.31.)과 일치시키고, 신고 범위도 기존 실손보험 이외 자동차보험을 추가·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
- 금융감독원은 생·손보협회 및 보험회사에 제보자의 신원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수사·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여 제보 유인을 극대화하겠습니다.

<그간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>

제보 내용	특별신고 포상금
· 혐의 병원은 환자에게 실제 모발이식 등을 하면서 마치 무좀 등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	5천만원
· 혐의 병원과 환자들이 공모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·퇴원확인서, 영수증 등을 발급	

※ 최근 5년간 제보자 1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금은 약 2.3억원(안과 질환 관련 보험사기)

II. 주요 내용

1

신고기간 등 확대

- (신고기간) 경찰청의 「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」 종료일과 일치
 - (기존) '26.1.12(월) ~ 3.31(화) → (변경) '26.1.12.(월) ~ **10.31.(토)**
- (신고대상) 실손보험 이외 자동차보험 추가('26.3.25.부터)
 - (기존)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·의원(한방병원, 한의원 포함) 및 의사, 브로커 등
 - (변경) 실손 및 **자동차** 보험사기 의심 병·의원(한방병원, 한의원 포함), 의사, **자동차 정비업체(덴트포함)·렌터카 업체 관계자, 자동차 고의 사고 운전자, 브로커** 등

<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예시>

- ①(허위입원) 한방병원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무진료 입원* 또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편취**
 - * 환자를 대면 진료 없이 허위입원시키고 입원 기록을 사후 조작
 - ** 일반실을 1인실(상급병실) 환자로 조작하여 차액을 편취
- ②(유인·허위수리) 정비업체·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들을 유인하거나 서로 공모하여 수리비를 허위청구(허위판금, 부품 허위청구, 수리비 과다청구 등)

- (신고인)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 추가
 - (기존) ①병·의원관계자(의사, 간호사, 상담실장 등), ②환자 유인·알선 브로커(설계사 등), ③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
 - (변경) ①병·의원관계자(의사, 간호사, 상담실장 등), ②환자 유인·알선 브로커(설계사 등), ③의료기관 이용 환자, ④**자동차 정비(덴트포함)·렌터카 업체 관계자, 차주·운전자·동승자** 등
- (신고처)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(변동 없음)

- ①(전화) 금감원 콜센터[국번없이 1332 → 4번(금융범죄) → 4번(보험사기)] 및 보험사 대표번호
- ②(인터넷) 금감원 '보험사기신고센터'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'보험범죄신고센터'
- ③(우편)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(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) 및 각 보험사(본사) SIU 부서

2

포상금 운영

* '특별포상금' + '보험범죄 신고포상금'(생손보험회 운영) 지급

□ (지급대상)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을 추가

<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>

신고인 구분	특별포상금(한시 적용)		보험범죄 신고포상금 (적발금액 비율에 따라 차등)
	포상금(정액)	지급 기준	
· 병의원(한방병원, 한의원 포함) · 관계자	5,000만원	· 수사 확정 또는 진행 · 구체적 증거 제공 ·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	적발금액 구간별* 신고 포상금 및 인센티브 지급 *5천만원 미만 100만원, 5천만원~ 1억원 200만원 등, 최대 20억원
· 병의원 제보 브로커(설계사 등) · <추가>자동차 정비(덴트포함) ·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	3,000만원		
· 의료기관 이용 환자 · <추가>차주·운전자·동승자 · 기타	1,000만원		

- ※ ① 1인이 동일한 1개 병원·정비업체 등을 다수 보험사에 중복 신고한 경우 → 1건으로 산정
- ② 1인이 상이한 3개 병원·정비업체 등을 신고한 경우 → 3건으로 산정
- ③ n명이 동일한 1개 병원·정비업체 등을 신고한 경우 → 1/n건으로 산정

□ (지급기준) 생·손보험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 심사(변동 없음)

- 제보자가 ①허위 진료기록부,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,
- ②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하여 수사로 이어져 ③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

□ (지급제한) 포상금 수혜 목적의 사전 공모 등 부정·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(특별포상금 및 보험범죄 신고포상금) 지급을 제한(변동 없음)

<참고>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

- 보험업 종사자(협회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)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
-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
- 신고사항이 이미 조사·수사 중이거나, 既 조치 완료된 경우
-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·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

Ⅲ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입니다.
- 또한 ‘신고-수사의뢰-수사진행’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,
-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·손보험회에 지도하겠습니다.



<참고1> 보험사기 신고방법(금융감독원 홈페이지)

<참고2> 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 대표번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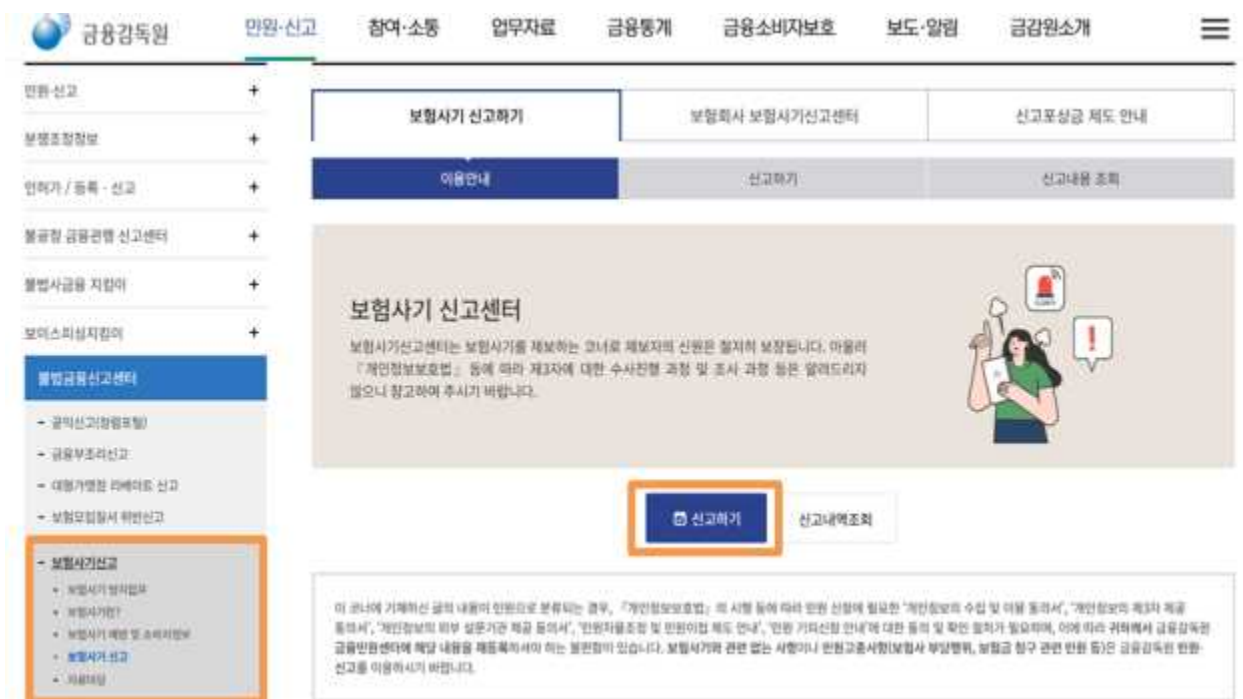
참고1

보험사기 신고방법 (금융감독원 홈페이지)
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접속 후 상단 '민원신고' - '불법금융신고센터' - '보험사기 신고'를 클릭



- 좌측 '보험사기 신고'를 클릭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험사기 신고내용을 제보



참고2

보험회사별 보험사기 신고 대표번호

생명보험사	대표번호	손해보험사	대표번호
한화생명	1588-6363	메리츠화재	1566-7711
ABL생명	1588-6500	한화손보	1566-8000
삼성생명	1588-3114	롯데손보	1588-3344
흥국생명	1588-2288	예별손보 (舊 MG손보)	1588-5959
교보생명	1588-1001	흥국화재	1688-1688
iM라이프생명	1588-4770	삼성화재	1588-5114
미래에셋생명	1588-0220	현대해상	1588-5656
KDB생명	1588-4040	KB손보	1544-0114
DB생명	1588-3131	DB손보	1588-0100
동양생명	1577-1004	AXA	1566-1566
메트라이프생명	1588-9600	AIG	1544-2792
KB라이프생명	1588-3374	하나손보	1566-3000
신한라이프생명	1588-5580	농협손보	1644-9000
처브라이프생명	1599-4600	신한EZ손보	1544-2580
하나생명	1577-1112	라이나손보	1566-5800
라이나생명	1588-0058	카카오페이손보	1544-0022
AIA생명	1588-9898		
BNP파리바카디프생명	1688-1118		
푸본현대생명	1577-3311		
NH농협생명	1544-4000		
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	1566-0999		